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

사 건 2021두42870 방송통신심의위원회결정취소및재심의청구의 소
원 고(상 고 인) 전민정
피 고(피상고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피상고인, 이하 '피고'라고만 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다 음

1. 상고이유의 요지

원고(상고인, 이하 '원고'라고만 합니다)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심은 원고적격과 처분성을 편협하게 해석하여 원고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

둘째, 방송법 제100조 제1항의 규정이 시청자가 권고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없다고 해석하거나 같은 조 제7항의 재심청구인에 시청자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한 방송법은 위헌이다. 기본권침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적극적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함으로써 기본권보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데, 원심은 방송법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셋째, 방송법의 목적인 방송의 공적 책임과 시청자 권익보호에 의거하여 보호법익의

침해 또는 위협에 대하여 원고의 이익과 피고의 이익을 비교형량할 때, 원심은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심리한 위법이 있다.

넷째, 대법원에서 방송법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것을 신청하겠다.

2.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

가. 원심은 대법원이 확립한 항고소송의 원고적격과 처분성에 대한 기준에 따라 판단하였고, 여기에 어떠한 해석상 위법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적법한 판단에 따라 이 사건 소가 각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재판청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나. 원고는 방송법 제100조 규정의 위헌을 주장하나, 행정처분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되어야 할 사항이고, 구체적인 위헌 사유 없이 막연히 헌법에 위배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는바, 방송법 제100조의 규정도 그와 같은 입법형성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고, 그 규정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쉽사리 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심이 방송법 제100조의 규정에 대해 위헌법률제청을 하지 않은 것은 사법적극주의에 반하여 잘못이라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부당합니다. 더욱이 원고는 이 사건 제1심 법원이나 원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다. 원심이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심리한 위법이 있다는 원고의 상고이유는 이 사건 소가 항고소송의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곧바로 법원의 기본권보호의무 위반을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 대법원에 방송법 제100조 규정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도록 신

청하겠다는 것 자체가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결론

이와 같이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의 정당한 판단을 원고의 독자적인 입장에서 부정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상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심리할 필요도 없이 기각되어야 합니다.

2021. 7. .

피고(피상고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태 우

대법원 특별2부

귀중